

2021년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 11.(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33건(안건번호 제2021-820호~제2021-168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820호~823호는 심의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828호는 게시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여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79호~1680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2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140건(안건번호 제2021-1호~140호)
 - 회의결과: 5개 안건은 가결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3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0개 안건(30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을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3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820호~제2021-168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20호~제 2021-823호는 민원인이 유선으로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도매업체가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일러스트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수정한 일러스트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신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820호~제2021-82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의류업체의 저작물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계약서 첫장과 마지막 장만 제출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2020. 12. 31.까지 독점 사용권을 가짐. 판매 장당 로열티가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내에서도 제품 사진은 정품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모델 사진은 가품을 입고 찍은 것으로 보임.
- C 위원: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델이 입고 있는 제품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음. 온라인 쇼핑몰 게시

물만 봐서는 가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음.

- C 위원: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도매업체는 어떤 입장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본인들은 가품을 만든 적이 없고, 소매업체가 중국에서 가품을 들여온 것 같다는 입장임. 그러나 소매업체는 제품을 도매업체에서 받았다고 주장함.
- B 위원: 저작권 침해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해됨.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침해 사실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정권고 제도 취지상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임.
- C 위원: 저작물 자체가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이 반영된 옷이 판매되고 있는 사안임.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불법복제물이 프린트 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음. 도매업체와 소매업체의 입장도 달라서 저작권자와 도매업체, 소매업체 삼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임. 또한 저작권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금방 밝혀질 부분임.
- D 위원: 개인 간의 계약사항이 문제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부결함.
- C 위원: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 보임. 심의위원회는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민원인과 게시

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형사 소송을 통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적절해 보이므로 부결함.

- A 위원: 저작물 자체가 아닌 저작물을 이용한 상품 판매에 관한 것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적절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20호~제2021-823호는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824호~제2021-827호는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및 영화 '○○○'를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824호~제2021-8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만화 및 영화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건으로 불법 개연성이 농후하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

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만화 및 영화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건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같은 의견임.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해당 안전들은 모두 데드카피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24호~제2021-82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828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비영리 교육 플랫폼 이용자가 플래시 게임을 제작하면서 배경음악으로 국내 음악인 '●●●'를 사용한 사안임.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을 입력하면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알림이 뜨고, 해당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처리한 것으로 추정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82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것으로 보임. '플래시'는 아니고 코딩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한 틀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으로 추정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을 입력하여 해당 게시물이 심의일 현재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28호는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29호~제2021-167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원더 우먼 198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1-829호는 2020. 12. 23.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임. 해당 저작물은 2021. 1. 7. 기준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함.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96호는 2020. 12. 9. 개봉한 미국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음.

(방송 '경이로운 소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1-1254호는 OCN에서 2020. 11. 28.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드라마임. 모바일 웹하드에서 제10화를 60포인트에 판매 중임. 방송 다음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한 화당 1,650원에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829호~제2021-16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29호~제2021-167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

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679호~제2021-168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79호~제2021-168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안전번호 제2021-1679호~제2021-1680호와 동일한 게시물임을 확인하였고,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79호~제2021-1680호는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20호~제2021-823호, 제2021-828호 및 제2021-1679호~제2021-1680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24호~제2021-827호 및 제2021-829호~제2021-167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호~140호의 140개 안건 중 5건은 가결하고, 135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3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0개 안건(30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3.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 1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